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15<sup>th</sup>,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헝가리: 2024년 이전가격을 증점으로 둔 조사 계획

헝가리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24 년에 대한 연간 조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전가격은 여러 부문에 있어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도입되어 처음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에 포함되는 요건은 2024 년에 대한 위험평가와 세무조사 선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산업 내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조사
- 제약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s)과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조건 준수여부 검증
- 국가별보고서(CbCR)와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검증

- 그룹 내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중 매우 낮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
- 무형자산과 관련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조사
- 특수관계사 간의 금전거래 또는 기타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 네덜란드: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 발표

2024년 3월 1일 네덜란드는 국가별보고서(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에 대한 EU 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은 EU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합니다.

- 각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Safeguard clause)
-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Dutch Trade Register(네덜란드 상업 등기부)에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웹사이트 게시의무(최소 5년간) 조항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벌금 부과

네덜란드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은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7858 (2024.01.23)**

**제목: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 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0.2.2. 설립되어 섬유, 의복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미얀마에 해외현지법인 000(이하 "미얀마현지법인")를 두고 있다.
- 처분청은 2022.8.24. 부터 2022.10.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AAA, BBB 및 CCC(이하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미얀마현지법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7 및 2020사업연도 쟁점파견직원에게 대한 인건비 소계 000원(이하 "쟁점인건비"), 지급임차료 외 소계 000원 (이하 "쟁점기타경비") 합계 000원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22.12.8. 및 2023.3.7. 청구법인에게 2017 및 2020사업연도 법인

세 합계 000원(2017사업연도분 000 원, 2020사업연도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및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4. 및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쟁점

미얀마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고 그들이 그곳 현지에 체류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지급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그들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거의 없고, 미얀마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생산관리 부문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문은 제품의 패턴을 만들고 작업지시서를 제작하는 업무 등으로 쟁점파견직원의 업무와 다르고, 통상 파견직원은 마땅히 파견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쟁점파견직원이 미얀마에 장기간 체류한 이유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li> <li>-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본인 소개 시 필요하여 앞면에 청구법인의 직함 등이 한글로 기재된 명함의 뒷면에 미얀마현지법인의 직함을 영문으로 기재·검용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파견직원이 미얀마현지법인의 소속직원으로서 그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추정하였다.</li> <li>- 청구법인은 생산분야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유능한 쟁점파견직원과 국외근로자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능력이 부족한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바이어측 검수업체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체 검수를 실시하는 등 제품생산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지출하였으며, 미얀마현지법인은 현지 슈퍼바이저 등의 인건비 외에 쟁점파견직원에게는 어떠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li> </ul>	<p>[쟁점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위탁가공업자의 품질관리 수준이 아니라,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의 임가공용역의 생산부문 전체 영역에서의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미얀마현지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 외에 국내에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 통상 국내위탁가공업자는 저임금 국가에 소재한 수탁가공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수탁가공업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실사를 거쳐, 계약대상 제품의 생산능력(시설·인원·관리), 안전교육, 현지 및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생산능력이 없는 해외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어 그 계약 자체에 모순이 된다.</li> <li>- 한국안전보건공단 소속 DDD(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안내한 직원은 쟁점파견직원 중 BBB (부장)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의 명함에는 'OOO의 Gernal Manager'로 인쇄되어 있다.</li> <li>- 발주처인 일본(바이어)측에서도 별도의 검수업체를 통해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수량 및 납품관리를 하고 있는 바, 쟁점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li> </ul>

#### 4) 판단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국외근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쟁점파견직원을 국외근무에 고용하기로 하며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청구법인은 생산계획수립부터,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는 봉제 전문 기술자를 미얀마 현지법인과 협의 하에 그의 생산공장에 파견을 한다. 생산부터 검사, 완성, 선적 등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 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국내직원)과 쟁점파견직원 간 업무지시 관련 송수신 메일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도, 인력·설비 현황 및 업무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내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파견직원의 업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편의를 위하여 앞면에 청구법인의 직함이 한글로 기재된 명함의 뒷면에 미얀마현지법인의 직함을 영문으로 기재·검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쟁점파견직원의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 포함) 내역 등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 내외로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의 한세실업 등 다수의 국내업체들도 미얀마 소재 임가공업체에 자신의 소속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미얀마현지법인과 쟁점파견직원 간 체결된 근로(고용)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3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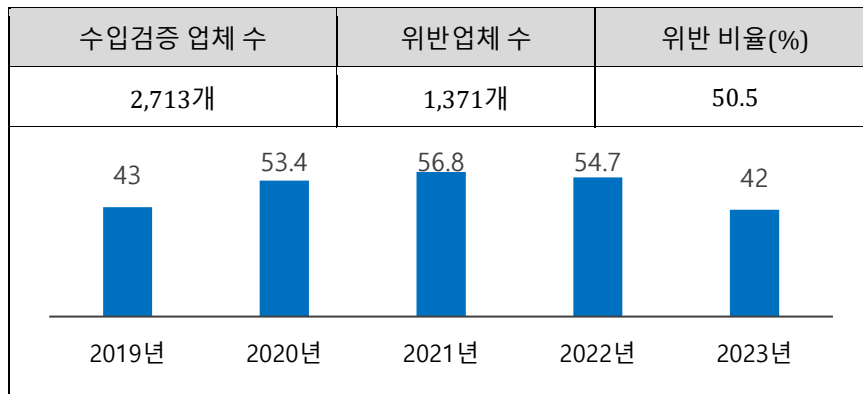
### 수입업체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1. 개요

한국은 2004년 4월 국내 첫 FTA인 한국-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년간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수출입 물량의 약 80%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관세청은 2019~2023년 FTA 활용 수입업체 가운데 검증대상 2,713곳 중 1,371곳 (50.5%)이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개년 원산지 규정 위반 업체 수>



#### 2. 주요 원산지 규정 위반 유형

한국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요청 시 협정 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나, 최근 직접 운송원칙 위반, 인증수출자 위반 등으로 인한 협정세율 취소처분 및 HS Code 오분류로 인한 관세 차액 추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산지 기준 미충족

위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적용 협정: 한-인도 CEPA</li><li>대상 품목: Electronic Control Unit(ECU)</li><li>적용 원산지 기준: CTSH(6단위 세번변경) + RVC(역내 부가가치비율) 35%</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 사유: 완제품 ECU(제9032.89호)와 소호(HS 6단위)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역내 발생된 부가가치가 35% 미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li> </ul>
<b>유의 사항</b>	<p>(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원재료의 적절한 HS Code 관리 및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관리 필요</p> <p>(부가가치기준)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관리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원산지율 관리 필요</p>

### (2) 직접운송원칙 위반

<b>위반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협정: 한-아세안 FTA</li> <li>위반 사유: 계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개별 운송사가 운송구간 별로 발행한 개별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소명 불가능.</li> </ul>
<b>유의 사항</b>	FTA 협정 상 계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경유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 및 최초 운송업자가 발급한 통과선하증권 등을 통해 제3국에서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3) 인증수출자 위반

<b>위반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협정: 한-EU FTA</li> <li>위반 사유: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권한이 상실되었음에도 재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원산지신고서 발급 및 FTA 협정세율 적용.</li> </ul>
<b>유의 사항</b>	한-EU FTA 상 6,000유로 품목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관리를 통해 적절한 원산지신고서 발급 필요.

### (4) HS Code 오분류로 인한 관세 차액 추징

<b>추징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협정: 한-아세안 FTA</li> <li>위반 사유: 수입업체는 아세안산 동부콩 HSK 제0713.90-0000호(기타 채두류)로 신고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음. 그러나, 한국 관세</li> </ul>
--------------	--

	청은 동일 물품을 HSK 제0713.39-0000호[기타 콩(Vigan종)]로 분류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27%를 적용하여 관세 차액분을 추징함.
<b>유의 사항</b>	협정세율은 FTA 협정에 따라 수입국 세관의 권한으로 양허됨에 따라, 수입업체는 FTA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국 기준의 적정한 HS Code 관리 필요.

**[KPMG 의견]**

한국의 FTA 체결 확대로 인해 수입업체의 FTA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관세청의 세수확보 기조에 따라 강도높은 원산지 검증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FTA 원산지 충족여부 소명 불가 시 수입업체는 수입 관세(FTA 협정관세율 - 기본관세율 차액분) 및 가산세 추징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FTA 활용 수입업체는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사전 대비해 FTA 적용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